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일 2015.01.01., 전문 개정일 2016.03.01., 최종 개정일 2024.01.01.)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명지대학 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체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 2. "채용조건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 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 3. "재교육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 4. "혼합형"이라 함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일정 교육과정 수료 후 산업체 등이 채용을 확정한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따른 직무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신설 2019.2.19.)
 - 5. "계약정원"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양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부)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 중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한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을 말한다.(신설 2023.10.1.)
-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 ①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수여학위명은 [별표1]과 같다.
 - ②채용조건형,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각각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혼합형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채용조 건형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에 포함 된다.(변경 2019.2.19.)
 - ③계약정원은 우선 활용하려는 학과(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3.10.1.)

제2장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

- 제4조(설치요건 및 학위과정) ①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1.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 2.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 3.제1호와 제2호를 통합하여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혼합형)(신설 2019.2.19.)
- ②계약학과는 학사과정,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
- 제5조(계약학과 설치·변경·폐지 및 운영기간)(조명 변경 2023.10.1.) ①계약학과를 설치,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단과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의 장은 계약학과 설치, 변경, 폐지·운영 계획서(별지서식1.6.7)를 기획예산팀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23.10.1.)
 - ②총장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학과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를 허가한다.(변경 2023.10.1.)
 - ③산업체등과 체결하는 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 2.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 3.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 4.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생 및 산업체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 5.재학 중 퇴직, 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 금 등에 관한 사항
 - 6.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 7.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 8.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 9.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 10.그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변경 2023.10.1.)
 - ④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계약에 의하되, 학위수여기간 이상으로 한다.
- **제6조(계약학과의 운영)** ①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과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②계약학과의 설치 및 폐지와 관련한 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한다.
 - ③계약학과의 학사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 1.학사학위과정은 교육지원처장이 관장한다.
 - 2.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은 해당 대학원의 장이 관장한다.
 - ④계약학과의 회계 관리는 교비 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 ⑤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 및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변경 2019.2.19., 2023.10.1.)
- 제6조의2(현장실습수업 및 현장훈련수업)[신설 2019.2.19., 조명 변경 2023.10.1.]①계약학과의 현장실습수업 및 현장훈련수업은 설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변경 2023.10.1.)
 - 1.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한 산업체 등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제22조의 현장실습수업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교육부고시)」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변경 2023.10.1.)

- 2.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현장훈련수업(OJT, On the Job Training)을 실시할 수 있다.(변경 2023.10.1.)
- 가.기업 현장교수 및 산업교육기관 지도교수의 지정
- 나.현장훈련수업 교육계획(변경 2023.10.1.)
- 다.학습일지, 학습활동서, 과제물 등의 작성·제출과 관리를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구축
- 라.가목의 산업교육기관의 지도교수에 의한 평가 및 학점부여(변경 2023.10.1.)
- 마.그밖에 현장훈련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변경 2023.10.1.)
- ②제1항제2호의 현장훈련수업은 소속 직원의 산업체 등에서의 재직경력, 근무시간 등을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변경 2023.10.1.)
- 제7조(퇴직 및 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 부(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도록 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 ②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변경 2023.10.1.)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계속되는 휴업(휴직)·사업장 이전·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때 학생 부담금은 산업체등과의계약에 의해 정한 바에 따른다.
 - ④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내 이수해야할 학점의 100분의 50이상을 취득하거나, 100분의 50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변경 2023.10.1.)
 - ⑤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일반학과 내 계약정원제로 입학한 학생이 채용 약정을 맺은 산업체 등에 취업하기 전에 해당 채용 약정한 산업체 등이 도산, 인수합병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신설 2023.10.1.)
 - 1. 해당 계약학과 또는 계약정원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
 - 2. 해당 계약학과 또는 계약정원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 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의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경비 부담 및 수업료 등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학생 납부금을 포함한다)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 ②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등록금은 학기제로 부과하며, 학생과 산업체등에 별도로 청구한다.
- 제9조(수입금 사용의 원칙) 계약학과 관련 수익금은 계약학과 자체운영경비, 당해 계약학과 설

치에 기여한 학부(과)의 예산 등에 적절히 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입학 및 학사관리

제10조(입학자격) ①계약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서 산업체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이 입학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3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계약학과의 재직기간을 달리 정할수 있다.(변경 2021.7.1., 2023.10.1.))

③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소속직원을 추천할 시에는 입학하려는 자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및 산업체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입학의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할 수 있다. (변경 2019.2.19., 2021.7.1.)

제11조(학생의 선발 및 학습구분) ①학생의 선발은 각 대학(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신입학·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하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계약학과에 주간과정 또는 야간과정을 둘 수 있으며, 편입학은 학사과정에만 두며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학기 및 수업일수는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출석수업의 비중은 100분의 50이상(졸업학점 기준)으로 한다.(변경 2023.10.1.)

제13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고 산업체등과 교육과정을 매년 1회 이상 협의하여야 한다.

②계약학과 주임교수는 매 학년도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30이상(학점기준)을 전임교원이 담당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변경 2023.10.1.)

③(삭제 2018.7.1.)

제13조의2(교과이수) ①계약학과 학사학위과정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은 120학점으로 하며,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양: 24학점 (변경 2021.1.1.)

2.전공: 60학점

3.자유선택: 36학점 (변경 2021.1.1.)

②계약학과 석사ㆍ박사학위과정 학생의 졸업 요건은 설치된 각대학원 학위과정과 동일하다.

(항 신설 2022.6.1.)

③계약학과의 학과별 교과목 표시기호는 (별표3)과 같다. (본조 신설 2018.7.1., 항번호변경

2022.6.1.)

④계약학과 학사학위과정 학생은 교양과목 가운데 채플 4학기와 공통교양 기독교영역 1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채플의 경우 공통교양 기독교영역 교과목(1개 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항 신설 2021.1.1.. 항번호변경 2022.6.1.)

제13조의3(편입학생 학점인정) ①계약학과 편입학생의 전적대학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학년 1학기 편입 학생: 소속 계약학과 졸업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인정

2.4학년 1학기 편입 학생: 소속 계약학과 졸업학점의 3/4범위 내에서 인정

②3학년 편입생은 교양과목 가운데 기독교영역에서 1과목 및 채플(한 학기)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4학년 편입생은 기독교영역에서 1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독교영역 1과목은 전적대학에서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채플은 공통교양 기독교영역 교과목(1개 과목)으로 대치하여 이수할 수 있다. (변경 2021.1.1.)

③계약학과 편입생은 전적대학 이수학점을 전공학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치 인정할 수 있다.

1.3학년 1학기 편입학생: 전공학점으로 최대 13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학점은 교양 및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2.4학년 1학기 편입학생: 전공학점으로 최대 3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학점은 교양 및 자유선택으로 학점으로 인정한다.

④졸업 시 평점평균은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업 성적만으로 산정한다. (본조 신설 2018.7.1.)

제13조의4(계약학과 근무경력 전공학점인정) [본조 신설 2018.7.1.] ①계약학과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입학하는 학기 개시일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1.신입학생 : 최대 24학점

2.3학년 편입학생 : 최대 12학점

3.4학년 편입학생 : 최대 6학점

②제1항에 따라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 근무기간에 따른 전공학점인정은 (별표 4)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인정학점은 수강신청 기준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변경 2019.2.19.)

③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 학점인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변경 2019.2.19.)

1.학생 면담(계약학과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

2.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근무경력 학점인정 요청(변경 2021.7.1.)

3.단과대학 심의·의결(변경 2021.7.1.)

4.단과대학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학생의 근무경력 학점인정 내역을 교육지원처장에게 보고 (변경 2021.7.1.)

- 제13조의5(원격수업)[본조 신설 2019.2.19.] ①원격수업 교과목 이수 학점은 소속 계약학과 졸업학점의 1/5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②원격수업의 학점 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다.
 - ③1차시의 수업 콘텐츠 진행시간은 25분(1학점 기준)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콘텐츠 특성에 따라 토론수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5분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다.
- 제13조의6(이동수업)[본조 신설 2023.10.1.] ①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다.
 - ②대학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 ③이동수업을 하려는 계약학과는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이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권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 ⑤이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는 계약학과의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 재 등 관련 시설을 구비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수업의 운영을 할 수 없다.
 - ⑥이동수업 장소에는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⑦대학은 이동수업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내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이동수업은 교내에서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4조(졸업) 계약학과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별표2]와 같다.
- 제15조(재직사실의 확인·보고) ①제10조제2항에 따라 입학한 자에 대하여 각 계약학과의 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해 재직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 1.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매학기 시작 전월(다만, 당해 학기 신·편입생의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변경 2021.1.1., 2023.10.1.))
 - 2.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2학기 시작 전월(변경 2023.10.1.)
 - ②제1항에 의해 퇴직자로 확인되는 경우, 사유를 조사하여 학사과정의 경우는 교육지원처장에 게, 석사 및 박사과정의 경우는 각 대학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학사제도 적용의 예외) ①계약학과는 학칙에서 정한 일반휴학, 전과, 재입학, 다전공(부전 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계약학과는 타 학과 학생의 다전공(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이수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운영위원회) ①계약학과 설·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본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가.구성 : 본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교육지원 처장, 입학처장, 대학원교학처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약간 명의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나.기능 : 본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계약학과 설·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수입금의 배정기준 등 기타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 한다.

2.학과별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가.구성: 학과별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계약학과 주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전임교원, 산업체 관계자, 소속 학과 학생을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다만,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전체위원의 1/3이상 되도록 한다.

나.기능 : 해당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협의(매년 1회 이상) 등 학과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변경 2019.2.19., 2021.7.1.)

제18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우리 대학교 학칙,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및 학사처리에 관한 내규(학사과정·대학원) 등을 준용한다.(변경 2019.2.19.)

부

칙

부 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부 이 규정은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학원 반도체장비공학과는 이 규정과 명지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대학원)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을 학과 운용에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과 (별표2)는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과 (별표2)는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별표1)과 (별표2)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별표1)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계약학과 입학정원, 수여학위명, 설치기간(신설 2017.3.1., 2017.7.17., 2017.10.1., 2018.2.20., 2019.2.19., 2019.9.1., 2020.3.1., 2021.3.1., 2021.11.1., 2022.3.1., 2022.6.1., 2022.11.1., 2023.3.1., 2023.11.1., 2024.1.1.)

□ 2017학년도

- 학사

소속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정원	수여학위명	설치기간
미래융합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경영학사	2017.3.1.~2021.2.28
○ ○ 대 학	○ ○ ○ 학 과	0 0	0 0	00	○○학사	YYYY.MM.DD~YYYY.MM.DD

[※]계약학과는 정원이 따로 있음

- 석사

소속	학과명	유형	입학	·구분	정원	수여학위명	설치기간
○○대학원	○ ○ ○ 학 과	0 0	0	0	00	○○학석사	YYYY.MM.DD~YYYY.MM.DD
○○대학원	○ ○ ○ 학 과	0 0	0	0	00	○○학석사	YYYY.MM.DD~YYYY.MM.DD

[※]계약학과는 정원이 따로 있음

- 박사

소속	학과명	유형	입학	구분	정원	수여학위명	설치기간
○○대학원	○ ○ ○ 학과	0 0	0	0	00	○○학박사	YYYY.MM.DD~YYYY.MM.DD
○○대학원	○ ○ ○ 학 과	0 0	0	0	00	○○학박사	YYYY.MM.DD~YYYY.MM.DD

[※]계약학과는 정원이 따로 있음

□ 2018학년도

- 학사

소속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정원	수여학위명	설치기간
미래융합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신입(1학년)	20	경 영 학 사	2018.3.1.~2022.2.28
미래융합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경 영 학 사	2018.3.1.~2020.2.28.
미래융합대학	뮤직콘텐츠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실용음악학사	2018.3.1.~2020.2.28.
미래융합대학	뷰 티 경 영 학 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뷰 티 경 영 학 사	2018.3.1.~2020.2.28.
미래융합대학	아동보육상담학과	재교육형	신입(1학년)	20	아동보육상담학사	2018.3.1.~2022.2.28
미래융합대학	아동심리상담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아동심리상담학사	2018.3.1.~2020.2.28.
미래융합대학	아동심리상담학과	재교육형	편입(4학년)	10	아동심리상담학사	2018.3.1.~2020.2.28.
미래융합대학	유 아 보 육 학 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유 아 보 육 학 사	2018.3.1.~2020.2.28.
미래융합대학	유 아 보 육 학 과	재교육형	편입(4학년)	10	유 아 보 육 학 사	2018.3.1.~2020.2.28.
미래융합대학	융합예술실용음악학과	재교육형	편입(4학년)	20	실용음악학사	2018.3.1.~2020.2.28.

※계약학과는 정원이 따로 있음

- 석사

소속	학과명	유형	입학	구분	정원	수여학위명	설치기간
○○대학원	○ ○ ○ 학 과	0 0	0	0	00	○○학석사	YYYY.MM.DD~YYYY.MM.DD
○○대학원	○ ○ ○ 학 과	0 0	0	0	00	○○학석사	YYYY.MM.DD~YYYY.MM.DD

※계약학과는 정원이 따로 있음

- 박사

소속	학과명	유형	입학	·구분	정원	수여학위명	설치기간
○○대학원	○ ○ ○ 학과	0 0	0	0	00	○○학박사	YYYY.MM.DD~YYYY.MM.DD
○○대학원	○ ○ ○ 학 과	0 0	0	0	00	○○학박사	YYYY.MM.DD~YYYY.MM.DD

※계약학과는 정원이 따로 있음

□ 2019학년도

- 학사

소속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정원	수여학위명	설치기간
미래융합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신입(1학년)	10	경 영 학 사	2019.3.1.~2023.2.28.
미 래 융 합 대 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편 입(3학년)	20	경 영 학 사	2019.3.1.~2021.2.28.
미 래 융 합 대 학	뮤 직 콘 텐 츠 학 과	재교육형	편 입(3학년)	20	실 용 음 악 학 사	2019.3.1.~2021.2.28.
미 래 융 합 대 학	아동심리상담학과	재교육형	편 입(3학년)	20	아동심리상담학사	2019.3.1.~2021.2.28.
미 래 융 합 대 학	유 아 보 육 학 과	재교육형	편 입(3학년)	20	유 아 보 육 학 사	2019.3.1.~2021.2.28.
미래융합대학	만화애니콘텐츠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만화애니콘텐츠학사	2019.3.1.~2021.2.28.
미래융합대학	복 지 경 영 학 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복 지 경 영 학 사	2019.3.1.~2021.2.28.
미래융합대학	복 지 상 담 학 과	재교육형	편 입(3학년)	20	복지상담학사	2019.3.1.~2021.2.28.
미래융합대학	아동복지상담학과	재교육형	신입(1학년)	20	아동복지상담학사	2019.3.1.~2023.2.28.
미래융합대학	유통산업경영학과	재교육형	신입(1학년)	20	경 영 학 사	2019.3.1.~2023.2.28.
미래융합대학	유통산업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경 영 학 사	2019.3.1.~2021.2.28.

- 석사

소속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정원	수여학위명	설치기간
대학원	스마트사회인프라 유지관리학과	재교육형	신입(1학기)		20	공학석사	2019.9.1. ~ 2022.8.31.
○○대학원	○ ○ ○ 학 과	0 0	0	0	00	○○학석사	YYYY.MM.DD~YYYY.MM.DD

[※]계약학과는 정원이 따로 있음

- 박사

소속	학과명	유형	입학	구분	정원	수여학위명	설치기간
○○대학원	○ ○ ○ 학과	0 0	0	0	00	○○학박사	YYYY.MM.DD~YYYY.MM.DD
○○대학원	○ ○ ○ 학과	0 0	0	0	00	○○학박사	YYYY.MM.DD~YYYY.MM.DD

[※]계약학과는 정원이 따로 있음

□ 2020학년도

- 학사

소속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정원	수여학위명	설치기간
미래융합대학	만화애니콘텐츠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만화애니콘텐츠학사	2020.3.1.~2022.2.28(2년)
미래융합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신입(1학년)	20	경영학사	2020.3.1.~2024.2.28(4년)
미래융합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경영학사	2020.3.1.~2022.2.28(2년)
미래융합대학	뮤직콘텐츠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실용음악학사	2020.3.1.~2022.2.28(2년)
미래융합대학	복지상담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복지상담경영학사	2020.3.1.~2022.2.28(2년)
미래융합대학	스포츠산업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스포츠산업경영학사	2020.3.1.~2022.2.28(2년)
미래융합대학	아동복지경영학과	재교육형	신입(1학년)	20	아동복지경영학사	2020.3.1.~2024.2.28(4년)
미래융합대학	아동심리상담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아동심리상담학사	2020.3.1.~2022.2.28(2년)
미래융합대학	유아보육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유아보육학사	2020.3.1.~2022.2.28(2년)
미래융합대학	유통산업경영학과	재교육형	신입(1학년)	20	경영학사	2020.3.1.~2022.2.28(2년)
미래융합대학	융합디자인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융합디자인학사	2020.3.1.~2022.2.28(2년)

□ 2021학년도

- 학사

소속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정 원	수여학위명	설치기간
미래융합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경영학사	2021.3.1.~2023.2.28.
미래융합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신입(1학년)	20	경영학사	2021.3.1.~2025.2.28.
미래융합대학	뮤직콘텐츠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실용음악학사	2021.3.1.~2023.2.28.
미래융합대학	아동보육상담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아동보육상담학사	2021.3.1~2023.2.28.
미래융합대학	아동심리상담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아동심리상담학사	2021.3.1.~2023.2.28.
미래융합대학	융합예술실용음악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융합예술실용음악학사	2021.3.1.~2023.2.28.
미래융합대학	만화애니콘텐츠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만화애니콘텐츠학사	2021.3.1.~2023.2.28.
미래융합대학	복지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복지경영학사	2021.3.1.~2023.2.28.
미래융합대학	복지상담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40	복지상담경영학사	2021.3.1.~2023.2.28.
미래융합대학	유통산업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경영학사	2021.3.1.~2023.2.28.
미래융합대학	스포츠산업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스포츠산업경영학사	2021.3.1~2023.2.28.
미래융합대학	융합디자인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융합디자인학사	2021.3.1.~2023.2.28.
미래융합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미용예술학사	2021.3.1.~2023.2.28.
미래융합대학	웹툰콘텐츠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웹툰콘텐츠학사	2021.3.1.~2023.2.28.

□ 2021학년도

- 석사

소속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정원	수여학위명	설치기간
대 학 원	반도체장비공학과	재교육형	신	이	20	공학석사	2021.09.01.~2023.8.31.

□ 2022학년도

- 학사

소속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정 원	수여학위명	설치기간
미래융합대학	만화애니콘텐츠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만화애니콘텐츠학사	2022.03.01.~2024.02.29.
미래융합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경영학사	2022.03.01.~2024.02.29.
미래융합대학	뮤직콘텐츠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실용음악학사	2022.03.01.~2024.02.29.
미래융합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미용예술학사	2022.03.01.~2024.02.29.
미래융합대학	복지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복지경영학사	2022.03.01.~2024.02.29.
미래융합대학	복지상담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40	복지상담경영학사	2022.03.01.~2024.02.29.
미래융합대학	스포츠산업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스포츠산업경영학사	2022.03.01.~2024.02.29.
미래융합대학	아동심리상담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아동심리상담학사	2022.03.01.~2024.02.29.
미래융합대학	웹툰콘텐츠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웹툰콘텐츠학사	2022.03.01.~2024.02.29.
미래융합대학	유통산업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경영학사	2022.03.01.~2024.02.29.
미래융합대학	융합디자인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융합디자인학사	2022.03.01.~2024.02.29.

- 석사

소속	학과명	유형	입학	구분	정원	수여학위명	설치기간
대 학 원	반도체장비공학과	재교육형	신	입	20	공학석사	2022.09.01.~2024.08.31. 2023.03.01.~2025.02.28.
대 학 원	스마트사회인프라 유 지 관 리 학 과	재교육형	신	임	20	공학석사	2022.09.01.~2024.08.31. 2023.03.01.~2025.02.28.

- 박사

소속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정원	수여학위명	설치기간
대 학 워	스마트사회인프라	게 그 ㅇ 처	גן סן	10	공학박사	2022.09.01.~2025.08.31.
대 학 원	유지관리학과	재교육형	신 입	10	등학학자	2023.03.01.~2026.02.28.

□ 2023학년도

- 학사

소속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정원	수여학위명	설치기간
미래융합대학	만화애니콘텐츠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만화애니콘텐츠학사	2023.03.01.~2025.02.28.
미래융합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신입(1학년)	20	경영학사	2023.03.01.~2027.02.28.
미래융합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경영학사	2023.03.01.~2025.02.28.
미래융합대학	뮤직콘텐츠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실용음악학사	2023.03.01.~2025.02.28.
미래융합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미용예술학사	2023.03.01.~2025.02.28.
미래융합대학	복지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복지경영학사	2023.03.01.~2025.02.28.
미래융합대학	복지상담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40	복지상담경영학사	2023.03.01.~2025.02.28.
미래융합대학	스포츠산업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30	스포츠산업경영학사	2023.03.01.~2025.02.28.
미래융합대학	아동보육상담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아동보육상담사	2023.03.01.~2025.02.28.
미래융합대학	아동심리상담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아동심리상담학사	2023.03.01.~2025.02.28.
미래융합대학	웹툰콘텐츠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웹툰콘텐츠학사	2023.03.01.~2025.02.28.
미래융합대학	유통산업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경영학사	2023.03.01.~2025.02.28.
미래융합대학	융합디자인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융합디자인학사	2023.03.01.~2025.02.28.
미래융합대학	융합예술실용음악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융합예술실용음익학사	2023.03.01.~2025.02.28

- 석사

소속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정원	수여학위명	설치기간
경영대학원	복지경영학과	재교육형	신입(1학년)	60	경영학석사	2023.03.01.~2025.02.28

□ 2024학년도

- 학사

소속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정원	수여학위명	설치기간
미래융합대학	만화애니콘텐츠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만화애니콘텐츠학사	2024.03.01.~2026.02.28.
미래융합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신입(1학년)	20	경영학사	2024.03.01.~2028.02.29.
미래융합대학	물류유통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경영학사	2024.03.01.~2026.02.28.
미래융합대학	뮤직콘텐츠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실용음악학사	2024.03.01.~2026.02.28.
미래융합대학	미용예술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미용예술학사	2024.03.01.~2026.02.28.
미래융합대학	복지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복지경영학사	2024.03.01.~2026.02.28.
미래융합대학	복지상담경영학과	재교육형	신입(1학년)	40	복지상담경영학사	2024.03.01.~2028.02.29.
미래융합대학	복지상담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40	복지상담경영학사	2024.03.01.~2026.02.28.
미래융합대학	복지상담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복지상담학사	2024.03.01.~2026.02.28.
미래융합대학	산업안전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산업안전경영학사	2024.03.01.~2026.02.28.
미래융합대학	스포츠산업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30	스포츠산업경영학사	2024.03.01.~2026.02.28.
미래융합대학	아동보육상담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아동보육상담학사	2024.03.01.~2026.02.28.
미래융합대학	아동심리상담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아동심리상담학사	2024.03.01.~2026.02.28.
미래융합대학	웹툰콘텐츠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웹툰콘텐츠학사	2024.03.01.~2026.02.28.
미래융합대학	유통산업경영학과	재교육형	신입(1학년)	20	경영학사	2024.03.01.~2028.02.29.
미래융합대학	유통산업경영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경영학사	2024.03.01.~2026.02.28.
미래융합대학	융합디자인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융합디자인학사	2024.03.01.~2026.02.28.
미래융합대학	융합예술실용음악학과	재교육형	편입(3학년)	20	융합예술실용음악학사	2024.03.01.~2026.02.28.

- 석사

소속	학과명	유형	입학구분	정원	수여학위명	설치기간
경영대학원	복지경영학과	재교육형	신입(1학년)	60	경영학석사	2024.03.01.~2026.02.28
경영대학원	유통물류경영학과	재교육형	신입(1학년)	30	경영학석사	2024.03.01.~2026.02.28
경영대학원	유아학교경영학과	재교육형	신입(1학년)	30	경영학석사	2024.03.01.~2026.02.28

[별표2] 계약학과 졸업이수학점(신설 2017.3.1., 2017.7.17., 2017.10.1., 2018.2.20., 2018.7.1., 2019.2.19., 2019.9.1., 2020.3.1., 2021.1.1., 2021.3.1., 2021.7.1., 2021.11.1., 2023.3.1., 2023.11.1.)

■ 학사

학부(과)	전공	교양	자유 선택	최소이수 졸업학점	비고
물류유통경영학과	60	24	36	120	
뮤직콘텐츠학과	60	24	36	120	
뷰티경영학과	60	24	36	120	
아동보육상담학과	60	24	36	120	
아동심리상담학과	60	24	36	120	
유아보육학과	60	24	36	120	
융합예술실용음악학과	60	24	36	120	
만화애니콘텐츠학과	60	24	36	120	
복지경영학과	60	24	36	120	
복지상담학과	60	24	36	120	
아동복지상담학과	60	24	36	120	
유통산업경영학과	60	24	36	120	
복지상담경영학과	60	24	36	120	
스포츠산업경영학과	60	24	36	120	
아동복지경영학과	60	24	36	120	
융합디자인학과	60	24	36	120	
미용예술학과	60	24	36	120	
웹툰콘텐츠학과	60	24	36	120	
산업안전경영학과	60	24	36	120	

■ 석사

소속	학부(과)	입학구분	전공	기본이수요건	논문
대학원	스마트사회인 <u>파</u> 라 유지관리학과	신입 (1학기)	24	* 외국어시험 합격 * 종합시험 합격(2과목) * 논문지도교과목 2회 이상 이수 * 연구윤리강좌 수강 *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 제출	P 또는 현장실습 6학점
대학원	반도체장비 공학과	신입 (1학기)	24	* 외국어시험 합격 * 종합시험 합격(2과목) * 논문지도교과목 2회 이상 이수 * 연구윤리강좌 수강 *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 제출	P 또는 연구보고서
경영 대학원	복지경영학과	신입 (1학기)	30	* 경영대학원 내 일반학과와 동일: 수료학점 30학점 (2학점 × 15과목) * 논문학위인 경우 24학점 이수하고 논문교과목(논문 심사)을 이수하여야 함 * 학점이수 외에도 전과목 평균성적 3.0이상이고 종합 시험을 합격하여야 졸업 요건 충족 * 종합시험은 자격(18학점 이수 및 평점 3.0이상) 충족시 3과 목 선택하여 응시, 3과목 모 두 70점 이상시 합격, 불합격 졸업시 수료	

■ 박사

소속	학부(과)	입학구분	전공	기본이수요건	논문
대학원	스마트사회인프라 유지관리학과	신입 (1학기)	36	외국어시험 합격 * 종합시험 합격(4과목) * 논문지도교과목 4회 이상 이수 * 연구윤리강좌 수강 *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 제출	Р

[별표3] 계약학과 교과목 기호표 (신설 2018.7.1., 변경 2021.1.1. 신설 2021.7.1., 변경 2023.11.1.)

대 학	학부(과)	전 공	표시부호	비고
	물류유통경영학과		물류	
	뮤직콘텐츠학과		뮤콘	
	뷰티경영학과		뷰경	
	아동보육상담학과		보상	
	아동심리상담학과		아심	
	유아보육학과		유보	
	융합예술실용음악학과		융예	
	만화애니콘텐츠학과		만화	
_1 _1	복지경영학과		복경	
미래융합	복지상담학과		복상	
(계약학과)	아동복지상담학과		아복	
	유통산업경영학과		유경	
	복지상담경영학과		복지	
	스포츠산업경영학과		스포	
	아동복지경영학과		아경	
	융합디자인학과		융디	
	미용예술학과		미용	
	웹툰콘텐츠학과		웹툰	
	산업안전경영학과		산경	

[별표4] 계약학과 근무경력 전공학점 최대 인정 기준 (신설 2018.7.1., 2019.2.19.)

기준일	근무경력	최대 인정학점
	만 10개월	3학점 이내
	만 11~24개월	6학점 이내
	만 25~36개월	9학점 이내
ો જે જેડિયા મો કો લો	만 37~48개월	12학점 이내
입학 학기 개시일	만 49~60개월	15학점 이내
	만 61~72개월	18학점 이내
	만 73~84개월	21학점 이내
	만 85개월 이상	24학점 이내

[별지서식1] 계약학과등 설치・운영계획 신고서 (신설 2016.3.1., 2023.10.1.)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 []에는 8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계약형태	[]단독계약, []공동계의	ᅣ, []제3자계	약(사업	자단체와 계약	·, 국가 • 지기	자체 등 재	정지운	일 시)
신고유형	산업교육기관	관명		산업교육기관 소재지(주소)					
및 산업교육 기관명	첨단(신기술 * 첨단(신기술)	학부명 경우 계약정원을 두는 일반학)분야 해당 여부 : []여 분야는 「첨단(신기술)분야 준 고시」 별표 1에 따름	∥, []아니오		有 기관 수 : 有 기관 정보		식 작성(필:	수)	
	유형	입학정원	계약기	구 -	취득흐	· 나위	신/	편입	
	[] 재교육형 [] 채용조건형	대학 전체 입학정원: 명	0000	. ~	예) 산업학사,		신압	 과정/ 일과정	,
	[]계약정원	일반학과·학부 정원: 명 계약정원: 명	2023 2023	. ~	예) 산업학사,	공학석사		<i>과정 </i> 과정	,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이동수업 실시 여부): []예, []아니오								
기본	계약학과・학				부 경비 부담 비율				
정보	구 분	참여 기관 부담	외부기관 저	[원	대학 자체	감면	학생	부담	
	등록금	%		%		%			%
	기타 경비	%		%		%			%
	경비 총계	%		%		%			%
	- 외부기관명 / 사업명: 외부기관 지원 시 작성								
	비고: 기타 추	: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형	항 적시						
	_	학연협력촉진에 관한 t 영계획을 신고합니다.	널률」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0	에 따라	위와	같이
						년	월		일
		신고인					(5	기관장	직인)
교육년	부장관 귀ㅎ	·}							
	서류명 1.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계획 신고서 1부						수수료		
첨부서류	점부서류 2. 학교규칙 개정안 1부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4. 계약서안 1부

[별첨] 참여 기관 정보 (뒤쪽)

연번	기관명	기관 유형	산업 분류	계약기간	상시 근로자 수 (명)	기관 소재지 (주소)

작성방법

- ※ 아래 기관 유형에 따라 ⑷, ⑤, ⑥에 해당할 경우에는 작성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만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1. 기관 유형
- 구분은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④ 국가(군부대 포함), ⑤ 지방자치단체, ⑥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하되, ① ~ ③의 구분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경우 ⑥ 기타로 작성할 때에는 세부 내용을 반드시 별도로 작성합니다.

구분	기준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①, ② 외의 기업

- 2. 산업 분류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3. 상시근로자 수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 수를 작성합니다.

[별지서식2] 계약학과 사전 점검 확인서 (신설 2016.3.1.)

계약학과 사전 점검 확인서

구분		내 용	비고
	학과명	000학과	
	학습구분	주간과정/야간과정	
	수업방법	주간/야간/주말/(혼용)	
	신고유형	1. 채용조건형 2. 재교육형(신/편입)	택1
계약학과	계약유형	1.단독 2.공동 3.제3자계약	택1
	희망 정원	명	
	참여 교원수	명	
	학위과정(신입/편입)	학사/석사/박사(신입/편입)	
	산업체와의 업무연관성	상 / 중 / 하	택1
	학과명	000학과	
모체학과	입학정원	명	최근 3.1 기준
_ 포제목 <i>퍼</i>	재학생수	명	최근 4.1 기준
	교원수	명	최근 4.1 기준
최소 개설인원	학부(15명 이상)	준수(00명 예정)	학생모집 가능 여부
개발전년 준수여부	대학원(10명 이상)	준수(00명 예정)	학생모집 가능 여부
	산업체명		
	주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준수(00명)	
산업체	 대학과 동일권역 여부	동일권역 or	동일권역
		대학과의 거리 100km 이내	(시·도단위)
	산업체 경비부담 비율	준수	※입학금 포함
	[등록금의 50%이상]	110/01/10	
외부	사용 여부	사용/미사용	T 4 7101
학습장	장소	1.0./015#	주소기입
조유 어구		소유/임대	※임대차기간 확인요
산업체 교육의뢰 증빙서류(직인必)		접수	공문 or 교육의뢰서
입학자격(입학일 기준 9개월 이상 재직)		운영요령 내용 확인함	 재교육형
준수 조건			, 5
출석수입 비중(50%이상) 준수 조건		운영요령 내용 확인함	
	-업참여(30%이상) 준수 조건	운영요령 내용 확인함	
	황 등 산업체 고지 준수 조건	운영요령 내용 확인함	매 학기
행정인력 흑	확보 계획	확보함	교학팀 직원

계약학과 사전 점검 확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학과 교수 ○○○ (인)

확인자 : ○○○학장/○○○대학원장 ○○○ (인)

명지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3] 계약학과 표준계약서 (신설 2016.3.1. 변경 2021.7.1.)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명지대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회사명: (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명지대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 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 제 2 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 제 3 조(학생 선발·입학) 입학대상은 ○○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 제 4 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 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 제 5 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수업, 현장실습 수업으로 한다.
- 제 6 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명지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제 7 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 제 8 조(경비 부담) ①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산업 체" 소속직원이 각각 납부한다.
 - ② "산업체"와 "계약학과 학생"의 경비(입학금 포함)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산업체 분담비율 : 00%
 - 2. 학생 분담비율 : 00%
 - ③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 ④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⑤ "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⑥ "학교"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인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 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9 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8조 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 ② "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 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

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 제 10 조(산업체 시설사용) ①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산업체"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 제 11 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 제 12 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명지대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운영규정 등을 적용한다.
- 제 13 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 ②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 ③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 제 14 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명지대학교 학칙, 계약학과 운영규정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교"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머지미원그		
명지대학교	업체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주 소	
6기도 응전시 시전부 6시도 110	대표자	(직인
총 장 000(인)		

[별지서식4]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신설 2016.3.1. 삭제 2021.7.1.)

[별지서식5] 근무경력 학점인정 요청서(신설 2019.2.19. 삭제 2021.7.1.)

[별지서식6]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변경 신고서(신설 2023.10.1.)

계약학과 등의 설치 · 운영 변경 신고서

	· ••			,			
	계약형태	[]단독계약,[]공동계익	f, []제3자계약(시	약(사업자단체와 계약, 국가·지자체 등 재정지원 시)			
	산업교육기	관명	산업	산업교육기관 소재지(주소)			
	계약학과 • 9	 학부명					
	* 계약정원의	경우 계약정원을 두는 일반학	과 • 학부명 - 점	ro 기관 정보 : 별첨	서식 작성(필수)		
	모체학과 명	/ 정원	첨딘	·(신기술)분야 해당 여-	부 : []예, []아니오		
		000학과 / 00명		단(신기술)분야는 「첨단(신 학정원 기준 고시」 별표 10			
계약	유형	입학정원	계약기간	취득학위	신/편입		
학과	[] 재교육형 [] 채용조건형	대학 전체 입학정원: 명 계약학과 • 학부 정원: 명	2023 ~ 2023	예) 산업학사, 공학석시	신입과정/ 편입과정		
기본 정보	[]계약정원	일반학과·학부 정원: 명 계약정원: 명	2023 ~ 2023	예) 산업학사, 공학석시	신입과정/ 편입과정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이동수업 실	시 여부): []예,	[]아니오			
	계약학과・학			비 부담 비율			
	구 분	참여 기관 부담	외부기관 지원	대학 자체 감면	학생 부담		
	등록금	%		% %	%		
	기타 경비	%		% %	%		
	경비 총계	%		% %	%		
	- 외부기관	·명 / 사업명: 외부기관	지원 시 작성				
	○ 변경 형	남목 : <i>모체학과 변경,</i>	입학정원 변경, .	계약기간 변경, 외부학(슬장 사용 여부 변경,		
변경		계약학과 경비부담 비	<i> 율 변경, 참여 신</i>	업체 변경 등			
- 신경 신고	│ ○ 변경 내용	요 · (기조)					
내용		> · (기년) → (변경)					
네ㅎ		(20)					
		유 : <i>산업체 참여 추가, 신</i>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학과 등의 설치·	· 운영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	다.						
			신고인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교육	부장관 귀히	i l					
			니르머				
	1. 기존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선	서류명 신고서 각 1부				
첨부서류		규칙 개정안 1부			수수료 없 음		
		학과 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 1부	₩ 🗖		
4. 계약서안 1부 210mm > 207mm(배사지(80a/m²) 또는 주지지(80a/m²) 1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별첨] 참여 기관 정보 (뒤쪽)

_ [[]						(117)
연번	기관명	기관 유형	산업 분류	계약기간	상시 근로자 수 (명)	기관 소재지 (주소)

작성방법

- ※ 아래 기관 유형에 따라 ④, ⑤, ⑥에 해당할 경우에는 작성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만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1. 기관 유형
- 구분은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④ 국가(군부대 포함), ⑤ 지방자치단체, ⑥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하되, ① ∼ ③의 구분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경우 ⑥ 기타로 작성할 때에는 세부 내용을 반드시 별도로 작성합니다.

구분	기준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①, ② 외의 기업

- 2. 산업 분류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3. 상시근로자 수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 수를 작성합니다.

[별지서식7]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신설 2023.10.1.)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oli ⊏	에 6 차 는 것에 (표할 합니다.					
	계약형태 []단독계약,[]공동계약,[]제3자계	약(사업자단체와 계약, 국가·지자체 등 재정지원 시)				
신고유형	산업교육기관명	산업교육기관 소재지(주소)				
및						
산업교육	계약학과・학부명	- 참여 기관 수 : 개				
기관명	* 계약정원의 경우 계약정원을 두는 일반학과·학부명 유형 : []재교육형, []채용조건형, []계약정원	- 참여 기관 정보 :				
기단이	# 8 · []세포작용, []세증포인용, []세국용편					
	계약학과・힉	부부 운영 기간				
	- 설치일 :					
	- 폐지 예정일 :					
	- 운영 기간 : <i>00년 00월</i>					
	학생 현황					
신고	- 입학생 총수 : 운영기간 동안 입학한 학생 전체 수					
내용	- 졸업생 총수 : 운영기간 동안 졸업한 학생 전체 수					
	- 폐지일 기준 재학생 및 재적생 수 : <i>재학생 00명, 재적생 00명(총 00명) 또는 해당없음</i>					
	폐지 사유					
	계약기간 만료, 산업체 도산 등 사유 적시					
	, , , , , , , , , , , , , , , , , ,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학과등의 폐지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기관장 직인)

교육부장관 귀하

	서류명	
ti H II 크	1. 계약학과등의 폐지계획 신고서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학교규칙 개정안 1부	없 음
	3. 계약학과등의 운영세칙안(별도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별지서식8] 자체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서(신설 2023.10.1.)

00대학교 000학과 자체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서

계약학과 명			학과 유형		
입학 정원			학위 종류		
재학생 수			계약 유형		
모체학과 명			설치운영 기간		
(입학정원)			산업체 수		
산업체 명					
경비부담내역	산업체: 00%	외부기	관 지원: 00%	대학 자체감면: 00%	학생부담: 00%

구분	자체점검 항목	점검 결과	점검 결과 내용 및 조치계획	조치 기한
산업체	① 국가(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②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③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 ①~⑤ 중 해당되는 번호(중복가능), 해당되지 않는 경우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3자 계약 체결인 경우, 실제 참여하는 해당 산업체와도 공동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 해당 없음, 공동계약 체결, 공동계약 미체결 작성 / 공동계약 미체결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동일 계약학과가 다수 산업체와 중복 계약 시 해당산업체들이 유사 산업 또는 직무분야인지 여부 ☞ 유사 분야, 비유사 분야 작성 / 비유사 분야의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대학과 산업체가 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동일권역내 위치 여부 ☞ 동일 권역, 타권역 작성 - 산업체가 대학과 동일권역이 아닌 경우, 권역제한 완화에 대한 교육부 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			
학생 관리	☞ 승인, 미승인 작성 / 미승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10개월 이상 재직요건(재교육형 계약학과) ☞ 충족, 미충족, 대학원과정(해당없음) 작성 - 재직요건이 10개월 미만인 경우 교육부 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 ☞ 승인, 미승인 작성 / 미승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력사항 확인(학사과정의 경우 고졸자격 확인 등) ☞ 확인(이상없음), 미확인 작성 /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원천징 수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입학자격 및 재직사항 확인 여부 (재학생의 경우 대학기 시작 전월까지 확인) ☞ 확인(이상없음), 미확인 작성 / 미확인 시 사유 및 조			

구분	자체점검 항목	점검 결과	점검 결과 내용 및 조치계획	조치 기한
	치계획 작성			
	학생들에게 계약학과임을 사전고지 했는지 여부 <i>☞ 고지완료, 고지하지 않음 작성 /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i>			
	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정원'을 운영하는 경우 계약정원의 인원이 일반			
	학과 입학정원의 20% 이내인지 확인 여부 ☞ 일반학과 입학정원 00명. 계약정원 0명 해당 인원수 작			
	প্র			
	비자발적 퇴직(구조조정, 폐업 등) 후 학생신분 유지 자	0011		
	^r ☞ 해당 학과의 해당 인원수 작성	00명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 후 학생신분 유지	00명		
	자 ☞ 해당 학과의 해당 인원수 작성			
	운영위원회 설치여부			
	☞ 설치, 미설치 작성 / 미설치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운영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 준수 여부(산업체 및 학생 1/3 이			
위원회	상) ☞ 준수, 준수하지 않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및 조치계획 작성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산업체와 협의하였는지 여부(연 1회 이 상)			
	☞ 협의, 협의하지 않음 작성 / 협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 준수 여부(계약체결일 2주 전까지 설치계획서 제출 여부)			
	☞ 준수, 준수하지 않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변경계획 신고 준수 여부(매 학년도 시작 2 주 전까지 변경계획서 제출 여부)			
신고 절차	☞ 준수, 준수하지 않음, 해당없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 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 준수 여부(계약기간 종료, 재학생이 없는 경우 등 폐지신고서 제출 여부)			
	☞ 준수, 준수하지 않음, 해당없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설·폐 계획에 따른 학칙 개정 여부			
	☞ 개정, 미개정 작성/ 미개정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출석수업 비중 준수 여부(졸업학점 기준 50% 이상)			
	☞ 준수, 준수하지 않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사 관리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수업참여준수 여부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 이상)			
	☞ 준수, 준수하지 않음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생의 학업상황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였는지 여부			
	☞ 통보, 미통보 작성 /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 계획 작성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규정 하고 있는지 여부			
	☞ 미실시(해당없음), 규정, 미규정 작성 / 미규정 시 사			

구분		자체점검 항목	점검 결과	점검 결과 내용 및 조치계획	조치 기한
		유 및 조치계획 작성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원격수업 비중이 졸업학점			
		기 50%를 초과하는 지 여부 (원격대학 제외)			
	1	미실시(해당없음), 초과, 초과하지 않음 / 초과하는 경			
		<i>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i> 이동수업의 운영 여부			
		' - ' - ' - ' - ' ' ' '			
		☞ 운영, 미운영 작성 이동수업 관련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였는지 여			
		이승규급 전한 사용을 획적으로 경이났는지 역 부			
		│ ' │ <i>☞ 미운영(해당없음), 규정, 미규정 작성 / 학칙으로</i> │			
		정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 70%이상의 동의를 얻			
		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승인, 미승인 작성 / 미승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 장소가 동일 권역인지 여부			
	ो	☞ 미운영(해당없음), 동일 권역, 타 권역 작성 / 타 권역인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동	이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 잘 갖추었는지 확인 여			
	수	부			
	업	☞ 미운영(해당없음), 구비 확인, 구비하지 못함 작 성 / 시설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사유 및 조치계			
		경기 시설설비를 가비아시 듯한 경구 시ㅠ 및 소시계 획 작성			
		자동출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구축, 미구축 작성 / 구축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장의 여건 확인, 본교와 이동수업 장에서			
		의 수업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여부 확인			
		☞ 미운영(해당없음), 확인, 미확인 작성/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이동수업장의 산업체 무상제공 여부			
		☞ 미운영(해당없음), 무상, 비용지급 여부 작성/ 비			
	-1 -1	용지급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실습 실시 여부			
		미실시(해당없음), 실시(표준, 자율현장실습 구분) 작성 닭자시스 이어 지 「데하게 취자시스하기게 이어그			
		현장실습 운영 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 형(교육부고시)」 준수 여부			
		3(교육구고시)] 한구 역구 미실시(해당없음), 준수, 준수하지 않음 / 미준수 시 사			
	1	마실시(에정없음), 판구, 판구야시 않음 / 미판구 시 사 유 및 조치계획 작성			
	현장	훈련(OJT)을 실시하는 경우, 학습관리시스템(LMS)			
		- 여부			
		해당없음, 구축, 미구축 작성 / 미구축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현장훈련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체 등에서의 재			
	2	시경력, 근무시간 등을 기준으로 학점 부여 여부			
		미실시(해당없음), 부여, 미부여 작성 / 부여한 경우 사 유 및 조치계획 작성			
		# <i>및 소시계획 작정</i> 체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			
	한 학점의 20%를 초과하는지 여부				
	13F	미인정(해당없음), 미초과, 초과 부여 작성 / 초과하여			
		<u>학점을 부여한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u> 하저으 보러한 경우 며다 미 그드 편기서 드이 편			
		확점을 부여한 경우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의 평 가과정을 통해 부여되었는지 여부			

구분	자체점검 항목	점검 결과	점검 결과 내용 및 조치계획	조치 기한
	☞ 미인정(해당없음), 확인, 미확인 작성/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칙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 및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 정 제11조에 따라 학칙, 운영계약서 기재사항 준수 여부			
	☞ 준수, 미준수 작성 /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 성			
및	계약서에 계약(종료)기간 명시여부(자동갱신 불가)			
계약서	☞ 명시, 명시하지 않음 작성 /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기간이 졸업에 필요한 수업연한 이상인지 여부			
	☞ 이상, 이하 작성 / 이하인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산업체 부담분을 학기단위로 결정하여, 산업체에 별			
	도 청구하였는지 여부(공문 시행 또는 고지서 별도발			
	부)			
	☞ 청구, 청구하지 않음 작성 / 청구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 매학기 산업체의 부담금 납부 사실을 법인명의 계			
	좌입금, 예산편성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 인하였는지 여부			
	☞ 확인, 미확인 작성 / 미확인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학생이 전체 등록금을 선납한 후 개별적으로 정산하는지 여			
	부			
산업체 부담금	☞ 개별 정산(1명이라도 있을 시 작성), 해당 없음 작성 / 개별 정산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의 부담금			
	이 계약학과 필요경비의 50% 이상인지 여부			
	☞ 산업체 등 부담 비율 작성 / 50% 미만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산업체 현물부담 비율이 필요경비의 30% 초과 여부			
	☞ 현물부담 비율, 해당없음 작성 / 30% 초과 시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산업체 등에 훈련비 환급 및 세액공제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였는지 여부			
	☞ 안내, 안내하지 않음 작성 / 안내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조치계획 작성			

계약학과 자체점검결과 위의 점검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ㅇㅇㅇ 대학교 직위 ㅇㅇㅇ 서명

확인자 : ㅇㅇㅇ 대학교 총장 ㅇㅇㅇ 직인

[별지서식9] 이동수업 관련 규정내용 자체 점검표(신설 2023.10.1.)

이동수업 관련 규정내용 자체 점검표

계약학과 명		학과 유형		
입학 정원		학위 종류		
재학생 수		계약 유형		
모체학과 명		설치운영 기긴	<u> </u>	
(입학정원)		산업체 수		
산업체 명		·		
경비부담내역	산업체: 00%	외부기관 지원: 00%	대학 자체감면: 00%	학생부담: 00%

점검 항목(조문)	점검 결과				
제20조(이동수업) ①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산업체의 시설 제공 확인(동의)서 첨부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② 산업교육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제12조에 의 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 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 는 임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충족 / 미충족 택1 해당 유형 작성 (예: 제12조의 공동계약, 3자계약) ※ 유형 증빙자료 첨부 (협약서 사본 등)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동수업을 하고자 하는 산업교육기관 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④ 이동수업을 하려는 계약학과는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숭인을 얻어야 한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i>미충족 시 사유 작성</i>				
⑤ 이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권역 에 위치하여야 한다.	 충족(00km) / 미충족 택 1 ※ 위원회 심의 거친 경우, 승인일자 작성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⑥ 이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는 계약학과의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 관련 시설을 구비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수업의 운영을 할 수 없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⑦ 이동수업 장소에는 자동 출결관리시스템 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 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⑧ 산업교육기관은 이동수업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본교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이동수업은 본 교에서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충족 / 미충족 택 1 00개 과목(00학점, 00%) / 전체 00개 과목(00학점, 100%) 미충족 시 사유 작성 				

- 비고: [첨부 1] 계약학과 전체 교과목별 운영 계획
 - [첨부 2] 협약 산업체의 시설 및 장비 무상 제공 확인(동의)서
 - [첨부 3] 협약(계약) 체결서 사본
 - [첨부 4] 000 사업 개요 (또는 사업계획서)